

○ ○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

제 호 . . .

수 신: 공소청의 장 (검사:)

제 목: 피의자 등 소재 발견 통보서(수사중지 사건기록 반환 전)

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51조제5항에 따라 피의자 등의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통보합니다.

소재 발견 대상자	성 명	
	사 건 관 련 신 분	
	주 민 등 록 번 호	
	주 거	
	전 화	
대상 사건	사 건 번 호	
	송 부 일 자	
발 견 경 위		
비 고		

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

수사관